

# 아동수당

아동 수당은 가계 안정에 기여함과 동시에  
다음세대를 이끌어갈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.

**출생이나 전입 시는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 
15 일 이내에 신청하십시오 !**

## 신 청 방 법

- ◆ 자녀가 출생하거나 타 시구정촌에서 전입한 경우는 구청 · 종합지소 창구 (뒷면 참조)에 「인정 청구서」를 제출해 신청하십시오.
- ◆ 신청은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. 우편의 경우는 인정 청구서가 창구에 도착한 날이 신청일입니다.
- ◆ 공무원 분은 근무처에 신청해주시시오. (단, 고용 형태 등에 따라 샌다이시에 신청해야 할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근무처에 확인해주시시오.)
- ◆ 독립 행정법인 직원 분은 샌다이시에 신청해주시시오.

· 아동 수당은 원칙적으로 신청한 달의 익월분부터 지급됩니다.  
 · 출생일이나 전 주소지의 전출 예정일(사유 발생일)이 월말에 가까운 경우에도, 사유 발생일 익월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사유 발생일 익월분부터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 
 · 「15일째」가 휴무일(토,일,경축일)인 경우, 다음 업무일이 제출 기한일이 됩니다.  
 · 골든워크나 연말연시 등은 업무 창구가 평상시보다 적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 
 · 신청이 늦은 경우, 늦은 달 분의 수당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 바랍니다.

## 준 비 물

### 【제출해야 할 서류】

- ① 인정 청구서※<sup>1</sup> (신청 창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. 또한 샌다이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)  
 ※<sup>1</sup> 인정 청구서에 신청자 · 배우자의 마이넘버를 기입해야만 합니다. 「마이넘버 카드 (개인 번호 카드)」 또는 「통지 카드※<sup>2</sup>와 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(증명사진 첨부)」을 지참해주시시오.  
 ※<sup>2</sup> 개인 번호 통지서가 아닙니다. 통지 카드는 카드에 기재되어있는 성명 · 주소 등이 현재 주민표에 등록된 사항과 일치하는 것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② 청구자의 건강보험증 사본 (일부 건강보험증에 대해서는 「연금 가입 증명서」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)
- ③ 청구자 명의의 금융 기관 계좌번호를 알 수 있는 것 (배우자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로는 송금할 수 없습니다)

### 【해당자만 필요한 서류】

- ④ 신청서 등의 서류 <양육 아동과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은 신청서, 주민등록 등본 (아동이 속한 세대 전원 분, 세대주 · 가족 관계 · 본적 · 호주가 기재되어 있는 것, 복사 불가) 등. 단, 양육 아동이 샌다이 시내에서 별거하고 있는 경우 주민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.>  
 ※ ②~④의 첨부 서류는 추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.  
 ※ 신청하는 분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
## 신고가 필요한 경우

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 구청 · 종합지소 창구에 신고를 하십시오. 신고에 필요한 양식은 신청 창구에 비치하고 있으며, 샌다이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.

- ◆ 수급자와 아동이 별거했을 때 · 별거에서 동거하게 된 때
- ◆ 혼인 등으로 수급자의 입금계좌 명의를 변경하고 싶을 때
- ◆ 양육 아동이 증가했을 때, 줄었을 때 (출생 · 입양 · 양육하지 않는 경우 등)
- ◆ 수급자가 샌다이 시외에 전출했을 때 · 수급자가 아동을 양육하지 않게 된 경우
- ◆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
- ◆ 수급자가 공무원이 되었을 때, 공무원을 퇴직했을 때
- ◆ 수급자가 미성년 후견인이 종료가 되었을 때
- ◆ 아동이 시설에서 퇴소했을 때
- ◆ 혼인 등으로 지급 대상이 되는 아동의 생계 중심 자가 변경되었을 때
- ※ 상기 외에 신청하는 분의 상황에 따라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.

수급자가 샌다이 시외에 전출할 경우 전출지의 시구정촌에 전출 예정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5 일 이내에 새로 신청 수속을 하십시오. 수속이 지연될 경우 지연 월분의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.

뒷면에 이어짐

# 지 급 요 건

## ◆지급대상 아동

원칙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중학교 졸업 전 (0세부터 만 15세가 된 이후 최초 3월 31일까지)의 아동

## ◆수급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샌다이 시내 거주자

- ① 지급 대상이 되는 아동의 부 또는 모 중 생계의 중심이 되는 자 (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 포함)
- ② 지급 대상이 되는 아동의 미성년 후견인
- ③ 지급 대상이 되는 아동의 부모가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, 부모가 지정한 사람 (부모 지정자)
- ④ 지급 대상이 되는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수양부모
- ⑤ 상기 ①~④ 이외의 지급 대상이 되는 아동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분

※ 지급 대상 아동이 아동복지시설 등에 입소하는 경우 등은 해당 시설의 설립자 등이 수급자입니다.

## 지급액 <아동 1인당 월 지급액>

### ◆지급일 샌다이시에서는 원칙적으로 6월 · 10월 · 2월의 15일에 지급합니다.

※15일이 금융 기관 휴무일의 경우는 그 전 영업일에 지급됩니다.

※6월 지급 (2월 ~ 5월분) · 10월 지급 (6월~9월분) · 2월 지급 (10월~1월분)

### ◆지급액 아동 1인당 월 지급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.

	【아동수당】 소득 제한 한도액 미만		【특례지원】 소득 제한 한도액 이상		
일반수급자	3세 미만 (3세 생일이 속한 달까지)		15,000 엔		
	3세 ~ 초등학생	첫째 아이, 둘째 아이	0세부터 중학생까지 일률적으로 5,000 엔		
		※ 셋째 아이 이후※			15,000 엔
	중학생				10,000 엔
시설 수양부모 등의 수급자▼	3세 미만 (3세 생일이 속한 달까지)	15,000 엔			▼시설 수양부모 등의 수급자에 대해서는 소득제한 적용이 없습니다.
3세 ~ 중학생		10,000 엔			

※생년월일이 만 18세가 된 후 최초 3월 31일까지의 아동 중에서 출생 순이 됩니다.

## 소득 제한 한도액

※부모 합산이 아닙니다.

그해 4월~5월까지의 수당에 대해서는 전년도 (전전 년도 분)의 소득으로 결정합니다.

그해 6월~다음 해 5월까지의 수당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(전년 분)의 소득으로 결정합니다.

또한 소득 제한 한도액은, 향후 국가 제도 개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부양가족 수	0명	1명	2명	3명	4명 이상
소득액	6,220,000	6,600,000	6,980,000	7,360,000	1명 증가에 따라 380,000 가산

※ 세대 합산 소득이 아닌 수급자와 배우자 각각의 소득으로 결정되며, 고소득자가 수급자가 됩니다.

※ 부양가족 등이 동일 생계 배우자 (70세 이상인 자에 한함) 또는 노인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가산이 있습니다.

★「부양가족」이란 시민세법 상 동일 생계 배우자 및 부양가족 등입니다.

★「소득액」이란 수입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한 금액입니다. 실제 결정은 다른 퇴직소득, 양도소득 (특별 공제액을 공제한 것), 잡손 등이 있으면 이를 합산해, 거기에서 일률 공제 (8만 엔), 잡손·의료비·장애인·미망인(남/녀) 등 각 공제액을 제한 금액으로 합니다. 또한, 미망인(남/녀) 공제신청은 신청에 따라 미혼 한부모에게도 적용됩니다.

## 현황 신고에 대해

수당을 받는 분은 매년 6월에 현황 신고서 (매년 6월 1일의 상황을 기재한 신고서)를 제출해야 합니다. 매년 6월에 신고서 제출 안내 및 현황 신고서를 발송하므로 기한 내에 제출하십시오.

## 신청 · 신고 · 문의 창구

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주시요.

아오바구청 (대표 전화) 225-7211	보육 급부과 육아 급부과
미야기노구청 (대표 전화) 291-2111	
와카바야시구청 (대표 전화) 282-1111	
다이하쿠구청 (대표 전화) 247-1111	
이즈미구청 (대표 전화) 372-3111	보건 복지과 보육 급부과
미야기 종합지소 (대표 전화) 392-2111	
아키우 종합지소 (대표 전화) 399-2111	
	보건 복지과 복지계